

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과정

가. 제출일자: 2022. 11. 10.

나. 제출자: 서구청장

다. 검토기간: 2022. 11. 11. ~ 11. 18.(8일간)

2. 근거법령

가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
나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

3. 주요내용

가. (안 제3조, 제4조) 상담실 명칭 및 설치장소

나. (안 제5조) 상담 분야

1) 행정, 민사, 형사, 가사사건 등 법률상담

2)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, 근로자 권리구제 등 노무 상담

3) 그 밖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

다. (안 제7조) 상담실 운영

1)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전화·서면 등 비대면 상담도 병행

2) 상담 운영일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

라. (안 제8조) 상담관

1) 변호사, 세무사 등 해당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

2) 상담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조항 마련

마. (안 제9조) 상담처리

1)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 내용인 경우, 서면,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

바. (안 제10조, 제11조) 상담 기록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

사. (안 제12조) 상담관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

4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·효율적으로 상담실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공무원이 아닌 세무, 법률 등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.
-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 짐에 따라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,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쉽게 상담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생활 상담실 설치하여 주민권익을 강화하고자 한 본 조례안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